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27호서식] <개정 2022. 12. 30.>

보내는 사람:

받는 사람: 귀하

주소:

[ ]고용보험 [ ]산재보험
[ ]월별보험료 [ ]개산보험료 감액조정통지서

사업장	사업장관리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	
	상호・법인명	대표자
	소재지	
보수적용 기준	[ ]실보수 [ ]기준보수	

보험료 감액 명세

구분		산정기간	보수총액	신고한(부과된) 보험료액	감액 후 보험료액	감액 보험료액
고용보험	계					
	실업급여					
	고용안정・직능개발사업					
산재보험 (부담금 등 포함)						
계						

감액 사유	[ ]보험료율의 인하 [ ]사업규모의 축소 [ ]그 밖이 사유

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4조제1항・제56조의5제6항제2호・제56조의6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조정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
년 월 일

근로복지공단 ○○지역본부(지사)장 직인

기안자(직위/직급) 서명 검토자(직위/직급) 서명 결재권자(직위/직급) 서명

협조자(직위/직급) 서명

시행 처리과명-일련번호(시행일)

우 /주소 /홈페이지주소

전화( ) /팩스( ) /담당 직원의 전자우편 주소 /공개구분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